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 3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

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

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

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

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삭제되었습니다.

○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

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삭제하여

임대 의무기간에 상관없이

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,

즉, 규제 완화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

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.

○ 또한,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시

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

건축 허가 이후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

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

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